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5. 2(금)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3.20.

나. 제안자 : 허인환, 김영분, 안병배, 정수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3.20.

라. 상정일자 : 2014. 4.21(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허인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
- 심사내용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컨택센터를 유치하고자 함.
- 컨택센터 유치에 따른 지원 분야와 규모를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유치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컨택센터 위탁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
- 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임.
- 컨택센터란, 기존의 단순 전화응대의 콜센터에서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전문상담원이 전화, E-mail,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 산업임.
- 컨택센터 산업은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기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05년부터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 인천지역에도 2015년까지 3만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여 컨택센터 기업 유치 및 글로벌 컨택센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자산운용 등 10개 업체¹⁾와 2013.12.17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원도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무공간 밀집형 산업인 컨택센터 유치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최적의 산업이라 사료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실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컨택센터 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1) 아시아자산운용, 동양생명, 동부화재해상보험, 하나 SK카드, 삼보컴퓨터, CJ헬로비전, 이레컴즈, 지엘 마케팅, 세종경영정보, 네오티스 등 10개 업체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우량 또는 유망기업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취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재정 확충 방안 및 운영 방법 등 여러 방면의 상세한 설명과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컨택센터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체의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바 그에 따른 준비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 중에 있으며, 2014. 3.21. 부터 4.2.까지(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업 내용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컨택센터란 용어가 외래어이므로 시민들의 혼동이 예상되기에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임.
- ⇒ 민간이 주도하는 컨택협회가 있으므로 추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도 컨택센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허인환·이한구·윤재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 의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을 근거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
2.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4. “기업 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登記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을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기업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의 사업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

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시설보조금”이란 컨택센터 서비스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9.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컨택센터 운영 등)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컨택센터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단 운영과 컨택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단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로 구성한다.

③ 투자유치단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제공 등) 시장은 컨택센터 유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수단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사용) ① 컨택센터 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 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업증설의 경우에는 증원된 상시고용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③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컨택센터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 등록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임차료(임차료 상당액)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보조금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대상과 규모 결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기업유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등의 상황을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휴·폐업 또는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적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채용과 2주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대상근로자의 인원수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 고
시설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업, 상시고용인원 기준 1인당 30만원	6개월	3억원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상당액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 1년간 건물임차료의 50%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50% 범위	1회	3억원	
고용보조금 (신규채용시)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업,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	6개월	3억원	

[별지 제4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고용 보조금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임차료상당액) 지원심의결정서 <input type="checkbox"/> 시설 보조금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보조금 신청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 천원 <input type="checkbox"/> 시설보조금 : 천원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천원	
	보조금 신청내용		
심의결정액	지급심의 결정액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 천원 <input type="checkbox"/> 시설보조금 : 천원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천원 <div style="text-align: right;">※ 위원회 심의란(공란)</div>	
	증액 또는 감액 내용	※ 위원회 심의란(공란)	
<p>「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인 천 광 역 시 장 (인)</p>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등 신청금액	천원		
총 지급결정액	천원		
지급결정내용	<input type="checkbox"/> 고용보조금 : 천원 <input type="checkbox"/> 시설보조금 : 천원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천원		
<p>「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인 천 광 역 시 장 (인)</p>			